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4년 7월 5일(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무역안보과 이태휘 과장(044-203-4050), 정해진 사무관(044-203-4058)

선택형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제도 시행에 따른 29개 기업 등급 지정

- 기업의 자율적인 관리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CP)기업* 지정제도를 선택형 CP제도로 개편해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29개 기업의 등급을 지정함.

* CP(Compliance Program)기업: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규정 등의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판정, 거래상대방 판단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기업으로 산업부장관이 지정

○ 해당 기업들은 **수출관리 상황과 능력에 따라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하였으며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등급을 결정함.

- **AAA 등급**(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어 등 9개 기업), **AA 등급**(에스케이하이닉스, 엘에스산전 등 18개 기업), **A 등급**(제이엠시,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2개 기업)

* 엘에스산전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었으며, 나머지 기업은 기존 제도에 의해 CP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심사를 거쳐 선택형 CP기업으로 전환

- 기존 CP 제도는 기업의 수출관리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등급 구분 없이 지정한 뒤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함.

* 기존 제도에 의해 CP기업으로 지정된 172개 기업은 7월 31일까지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존 CP는 취소됨

○ '14. 7. 4. (금) CP기업 워크숍에서 29개 기업에 CP 지정서를 수여하였으며 CP 제도 안내 및 모범사례를 소개함.

< CP워크숍 개요 >

○ 일시/장소: 2014. 7. 4. (금) 14:00 / COEX 그랜드볼룸
○ 참석자: 무역정책관, 기업 임직원 등 100여개사 200여명
○ 발표내용: CP 제도 안내 및 모범사례(현대위아, 엘에스산전), 기업의 전략기술 관리방안 등

□ 선택형 CP 기업은 자체 시스템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출관리를 하게 되며 **등급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부여됨.

○ ① '가'지역 수출에 대한 허가 면제, ② '나'지역 수출에 대한 허가 처리기간 단축, ③ 기술 수출허가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수출허가 절차가 간소화** 됨.

* "가"지역: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재래식 무기, 핵, 미사일, 생화학)에 모두 가입한 국가
"나"지역: "가"지역 이외의 국가

<기존 CP와 선택형 CP 인센티브 비교>

특례	기존 CP	선택형 CP		
		A	AA	AAA
'가'지역 허가면제	X	○	○	○
'나'지역 개별수출허가 처리기간	15일	15일	10일	5일
계약 체결없이 산업부장관의 허가대상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허가면제	X	X	○	○
허가면제에 해당되는 수출의 거래보고	수출 후 7일 이내 보고	7일	7일	연간

□ CP 기업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해 불법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실적과 운영보고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CP지정 취소하거나 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임.

○ CP 기업은 자율준수체제 운영 현황 및 수출허가의 실적을 각각 1년 또는 반기별로 산업부에 보고해야 함.

○ 또한 CP 기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불법 수출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감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임.

【붙임】 1. 선택형 CP제도 개요
2. 선택형 CP지정 기업 리스트
3. 선택형 CP 평가요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정해진 사무관(☎ 044-203-40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선택형 CP제도 개요

□ 선택형 자율준수무역거래자 개요

○ 대외무역법 제25조에 의거, **자율준수체제를 시행하는 업체의 신청** 하에 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

- 업체가 **수출관리 능력*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선택·신청**하고, 산업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 및 등급을 결정

* 전략물자 판정능력,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자율관리조직의 구축 및 운용 능력 등

- 기업의 **규모**(대/중소) 및 **업종**(제조/상사)**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3단계(A, AA, AAA)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

* 평가기준 : 수출관리조직 및 규정, 최고경영자의 준수의지, 수출거래심사, 출하관리, 교육, 감사, 문서관리, 위반사항 보고 및 시정조치, 정보보안관리

○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불법수출 및 보고의무 미이행 등의 사유 발생 시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가능

□ 주요 인센티브

○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 부여

* 한 번의 허가로 2-3년간 동일 품목(사용자포괄허가) 또는 동일 최종사용자(품목포괄허가)에 대하여 수출 가능

○ 비CP기업 보다 허가 처리기간이 최대 10일 단축(15일에서 5일로 단축)

○ 旣수출건과 동일 품목·동일 최종사용자인 경우, 제출 서류 면제

○ 계약 없이 전략기술 수출 시, 허가 면제 (AA등급 이상)

붙임2 선택형 CP 지정 기업 리스트

번호	등급	업종	기업명
1	AAA	제조	두산인프라코어
2			두산중공업
3			삼성전자
4			도레이첨단소재
5			씨게이트코리아
6			현대위아
7			히타치엘지데이터스토리지
8		상사	포스코건설
9			한국다우케미칼
10	AA	제조	국제엘렉트릭코리아
11			도쿄일렉트론코리아
12			레이디오펄스
13			삼성디스플레이
14			삼성테크윈
15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16			에릭슨엘지
17			에릭슨엘지엔터프라이즈
18			에스케이하이닉스
19			에스티아이
20			엘에스산전
21			윈스
22			이엔에프테크놀로지
23			이화다이아몬드공업
24		상사	삼성물산 상사부문
25			시큐아이
26			엠케이에스코리아
27			현대오토에버
28	A	제조	제이엠시
29		상사	삼성물산 건설부문

* 업종(제조업/상사)은 전략물자 취급 방식에 따른 분류임

붙임3 선택형 CP 평가요소

□ 등급별 주요 평가 요소

○ (A등급) CP 필수요소 구비 여부 및 실적을 평가하여 부여

* 조직의 구성, 자율수출관리규정 제정(수출허가절차, 교육 및 감사 포함) 등

○ (AA등급) A등급의 요소 외 이행의지 사례 및 수출관리 세부 절차 마련 시 부여

* 수출관리 이행의지, 규정 및 세칙 제정, 판정·허가결과 관리 등

○ (AAA등급) AA등급의 요소 외 수출 후 사후관리 및 우수사례 보유 시 부여

* 수출 후 사후관리, 국내거래방법 마련, 감사 실시, 구체적 교육 계획 및 실적 보유 등

평가항목			주요 평가지표
1	체제	수출관리조직	조직의 구성 및 책임 명확화 등
2		수출관리규정	규정·세칙 등의 제정 및 게시 여부
3		이행의지	최고경영자의 준수 의지 표출 사례 등
4	절차	수출거래심사	판정·허가 절차, 거래통보, 거래상대방 확인 여부 등
5		출하관리	출하 시 서류일치 여부 등 시스템 마련 등
6	유지관리	교육	교육 계획 및 실적 여부 등
7		감사	감사 계획·실적 및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여부 등
8		문서관리	판정·허가 등 관련 문서 보관 계획 및 실적 여부 등
9		보고 및 시정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보고절차 및 시정조치 여부 등
10		정보보안관리	전략기술관리 위한 기술 접근 권한 마련 등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